



소 방 청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유예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1. 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280(2021.12.16.)호 『소방시설 자체점검 유예 업무처리지침 관련 검토 요청』과 관련됩니다.

○ (현 상황)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관리업자에게** 자체점검을 실시하도록 위탁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소방시설관리사의 코로나19 확진, 병원입원(격리) 등 **관리업체의 귀책사유로** 자체점검 기간 내 점검을 실시하지 못한 경우에도 **관계인은 자체점검 미실시로 입건 처분(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자체점검을 실시해야 하는 해당월에 위와 같이 관리업체에 불가피한 상황 발생 시 관계인이 **타 관리업체를 선정(계약)**할 수 있는 **기간 부족**

○ (질의사항) 소방시설관리사가 **코로나19에 확진되어** 점검을 기한 내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소방시설 자체점검 유예 업무처리지침('16.4.27.)의 **유예대상(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수해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에 포함되는지 여부

○ (답 변)

- 자체점검을 위탁받은 관리업체의 소방시설관리사가 코로나19 확진, 병원입원(격리)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점검시기 내 자체점검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라면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소방시설 자체점검 유예 업무처리지침'의 유예대상(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수해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에 포함하여 관할 소방서의 **자체심의 후 유예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단 위와 같은 사유로 소방서 자체심의 후 유예된 경우는 **타 관리업체 선정**을 위한 **최소한의 기간**을 부여한 것이기에 **유예기간 내 반드시 자체점검을 실시**(유예종료 후 60일 이내 불가)해야 하며, 건축물의 사용이 중단된 것이 아니기에 **자체점검 실시월의 기준도 변경되지 않음**을 안내해드립니다.

※ (예시) 1월 종합대상 → (유예기간 내)2월 종합정밀점검 실시 → 7월 작동기능 점검 실시

끝.

소 방 청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예방과장), 부산광역시(재난예방담당관), 대구광역시(예방안전과장), 인천광역시(예방안전과장), 광주광역시(방호예방과장), 대전광역시(예방안전과장), 울산광역시(예방안전과장), 세종특별자치시(대응예방과장), 경기도지사(재난예방과장), 예방과장, 강원도지사(예방안전과장), 충청북도지사(예방안전과장), 충청남도지사(예방안전과장), 전라북도지사(방호예방과장), 전라남도지사(대응예방과장), 경상북도지사(대응예방과장), 경상남도지사(예방안전과장),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장(예방대응과장), 창원소방본부장(대응예방과장), (사)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

소방위	박상철	소방령	김문하	소방분석제도 전결 2021. 12. 20.
				과장 최재민

협조자

시행 소방분석제도과-1223 (2021. 12. 20.) 접수 재난예방과-21992 (2021. 12. 20.)

우 3012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9 (나성동) / www.nfa.go.kr

전화번호 044-205-7524 팩스번호 044-205-8915 / sam37@korea.kr / 대국민 공개

현장활동, 안전은 당신에게도 가장 우선입니다.